

#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- (일부개정) 2004-11-12 조례 제 2828호
- (일부개정) 2006-02-10 조례 제 2908호
- (일부개정) 2006-05-19 조례 제 2930호 (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)
- (일부개정) 2006-08-04 조례 제 2943호
- (일부개정) 2007-01-12 조례 제 2981호
- (일부개정) 2007-04-13 조례 제 2990호
- (일부개정) 2008-01-01 조례 제 3045호
- (일부개정) 2008-07-01 조례 제 3094호
- (일부개정) 2008-10-31 조례 제 3107호 (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)
- (일부개정) 2008-11-07 조례 제 3108호
- (일부개정) 2009-07-10 조례 제 3178호
- (일부개정) 2010-05-14 조례 제 3261호
- (일부개정) 2010-10-08 조례 제 3278호
- (일부개정) 2010-11-05 조례 제 3287호
- (일부개정) 2010-12-31 조례 제 3322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
- (일부개정) 2011-12-30 조례 제 341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
- (일부개정) 2012-07-16 조례 제 3478호
- (일부개정) 2012-10-10 조례 제 3512호
- (일부개정) 2012-12-28 조례 제 351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
- (일부개정) 2013-02-15 조례 제 3541호
- (일부개정) 2013-04-25 조례 제 354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
- (일부개정) 2013-05-31 조례 제 3558호
- (일부개정) 2013-06-28 조례 제 35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
- (일부개정) 2014-02-25 조례 제 3636호
- (일부개정) 2014-06-27 조례 제 3686호
- (일부개정) 2014-10-31 조례 제 3708호
- (일부개정) 2015-01-01 조례 제 3734호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조례
- (일부개정) 2015-02-17 조례 제 3747호
- (일부개정) 2015-07-01 조례 제 3793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개정 2006. 2. 10, 2008. 1. 1, 2008. 11. 7, 2009. 7. 10, 2010. 5. 14, 2014. 6. 27, 2014. 10. 31>

**제2조(교섭단체의 구성)** ①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,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10. 31]

[중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<2014. 10. 31>]

**제3조(상임위원회 설치)**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2. 25, 2014. 6. 27>

1.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이내
2. 정책복지위원회 7명 이내
3. 행정문화위원회 7명 이내
4. 산업경제위원회 7명 이내
5. 건설소방위원회 7명 이내
6. 교육위원회 7명 이내

[전문개정 2010. 5. 14]

[중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<2014. 10. 31>]

[제2조에서 이동 <2014. 10. 31>]

**제4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**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심사와 청원과 진정서 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09. 7. 10>
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 5. 14, 2010. 10. 8, 2010. 11. 5, 2010. 12. 31, 2011. 12. 30, 2012. 7. 16, 2012. 10. 10, 2012. 12. 28, 2013. 4. 25, 2013. 5. 31, 2013. 6. 28, 2014. 6. 27, 2015. 2. 17, 2015. 7. 1>

1. 의회운영위원회

- 가.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

2. 정책복지위원회

- 가. 여성정책관, 미래전략기획단, 기획관리실, 보건복지국, 충북도립대학,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충북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
- 다.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
- 라.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
- 마. 청주의료원, 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
- 바. <삭제 2015. 2. 17>

3. 행정문화위원회

- 가. 공보관, 감사관, 행정국, 문화체육관광국, 자치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
- 다. 충북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

4. 산업경제위원회

- 가.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
- 나.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관한 사항
- 다.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
- 라.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<개정 2015. 1. 1>
- 마.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
- 바.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<신설 2015. 2. 27>

5. 건설소방위원회

- 가. 재난안전실, 균형건설국, 바이오환경국, 혁신도시관리본부,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나.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
- 다.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
- 라.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

6. 교육위원회

- 가.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③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도 속하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. <신설 2013. 2. 15>

[중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<2014. 10. 31>][제3조에서 이동 <2014. 10. 31>]

**제5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** ① 의원은 한개의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(이하 “상임위원”이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.

<개정 2010. 5. 14>

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0. 5. 14, 2014. 6. 27>[중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<2014. 10. 31>][제4조에서 이동 <2014. 10. 31>]

**제6조(상임위원의 임기)**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

② 소속 위원회를 달리하거나 중도 사퇴에 따라 새로 보임되고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[전문개정 2014. 6. 27][중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<2014. 10. 31>][제5조에서 이동 <2014. 10. 31>]

**제7조(상임위원장)**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“상임위원장”이라 한다) 1명을 둔다. <개정 2009. 7. 10>

②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 <개정 2014. 10. 31>

③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0. 31>

[중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<2014. 10. 31>][제6조에서 이동 <2014. 10. 31>]

**제8조(특별위원회)**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04. 11. 12>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, 윤리심사,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 <개정 1998. 3. 6, 2009. 7. 10, 2014. 6. 27>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 다만,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<개정 1993. 7. 2, 2004. 11. 12>

[중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<2014. 10. 31>][제7조에서 이동 <2014. 10. 31>]

**제9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**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 <개정 2009. 7. 10>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개정 2009. 7. 10, 2014. 6. 27>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[중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<2014. 10. 31>][제8조에서 이동 <2014. 10. 31>]

**제10조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과 교체선임)** 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 다만,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 <개정 2014. 10. 31>

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. <개정 2014. 10. 31>

③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의원 1명,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,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 <개정 2014. 10. 31>

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.

<신설 2014. 10. 31>[제목개정 2014. 10. 31]

[중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<2014. 10. 31>][제9조에서 이동 <2014. 10. 31>]

**제11조(위원장의 직무)**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

[중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<2014. 10. 31>][제10조에서 이동 <2014. 10. 31>]

**제12조(부위원장)**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. <개정 2009. 7. 10>

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 <개정 2010. 5. 14>.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4. 6. 27>[전문개정 2007. 1. 12]

[중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<2014. 10. 31>][제11조에서 이동 <2014. 10. 31>]

**제13조(소위원회)**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[중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<2014. 10. 31>][제12조에서 이동 <2014. 10. 31>]

**제13조의2(위원회의 전문가 활용)**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자문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01. 3. 9, 2007. 4. 13, 2009. 7. 10>

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과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1. 3. 9, 2008. 11. 7, 2009. 7. 10>

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될 자문위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 <개정 2001. 3. 9, 2006. 2. 10, 2008. 11. 7, 2009. 7. 10, 2014. 6. 27>

④ 위촉된 자문위원의 직무내용과 수당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10. 5. 14, 2014. 6. 27>[제12조의2에서 이동 <2014. 10. 31>]

**제14조(준용규정)**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」을 준용한다.

<개정 2014. 6. 27>

[제13조에서 이동 <2014. 10. 31>]

**부 칙(1998. 4. 3 조례 제2382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1998. 6. 26 조례 제2393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1998. 10. 16 조례 제2414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1998. 11. 27 조례 제2423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1999. 4. 7 조례 제2445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1999. 11. 23 조례 제2525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00. 7. 12 조례 제2597호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

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3호 나목중 “옥천전문대학“을 “충북과학대학“으로 한다.

**부 칙(2001. 3. 9 조례 제2650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01. 9. 13 조례 제266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이하생략

**부 칙(2002. 5. 31 조례 제2707호)**

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03. 8. 29 조례 제276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** 이하생략

**부 칙(2004. 11. 12 조례 제2828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06. 2. 10 조례 제2908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06. 5. 19 조례 제2930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06. 8. 4 조례 제2943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**부 칙(2007. 1. 12 조례 제2981호)**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간사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된 간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것으로 본다.

**부 칙(2007. 4. 13 조례 제2990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08. 1. 1 조례 제3045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08. 7. 1 조례 제3094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08. 10. 31 조례 제310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)**

이 조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08. 11. 7 조례 제3108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09. 7. 10 조례 제3178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0. 5. 14 조례 제3261호)**

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0. 10. 8 조례 제3278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0. 11. 5 조례 제3287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0. 12. 31 조례 제332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하생략

**부 칙(2011. 12. 30 조례 제3419호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이하생략

**부 칙(2012. 7. 16 조례 제3478호)**

이 조례는 201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2. 10. 10 조례 제3512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2. 12. 28 조례 제351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하생략

**부 칙(2013. 2. 15 조례 제3541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3. 4. 25 조례 제354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하생략

**부 칙(2013. 5. 31 조례 제3558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3. 6. 28 조례 제35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이하생략**

**부 칙(2014. 2. 25 조례 제3636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4. 6. 27 조례 제3686호)**

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4. 10. 31 조례 제3708호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임과 교체선임에 관한 적용례)**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(2015. 1. 1조례 제3734호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조례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5. 2. 17 조례 제3747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5. 7. 1 조례 제3793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